

일본 자위대에 날개 달아주는 한일군사정보 보호협정

김창수
코리아연구원 원장

- I.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추진 배경
- II. 한일정보보호협정과 MD
- III. 한일정보보호협정과 자위대

I.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추진 배경

이명박 정부가 2012년에 밀실에서 처리하려다가 좌절된 적이 있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이 다시 물위로 떠올랐다. 한일 두 나라 정부는 이 협정을 올해안에 타결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한일 사이에 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려는 것은 정해진 수순에 따른 것이다. 미국과 일본의 의도가 맞물리면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기로 한국 정부와 이미 합의하였다. 일본은 2015년에 미일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자위대의 활동범위를 한반도를 비롯하여 중동으로까지 확대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의 의도에 따라서 한미일 삼각군사협력이 강화되는 추세이다. 한일 관계에서 큰 걸림돌이었던 일본군 위안부 문제도 2015년 12월에 한일 외무장관이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타결하였다.

2012년에 좌절되었던 한일정보보호 협정은 2014년 말에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이라는 우회적인 방법으로 재추진의 기반이 만들어졌다. 한국과 일본은 미국을 매개로 해서 군사정보를 공유하기 시작한 것이다. 한국과 미국이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기로 한 상황에서 한일군사정보의 교류는 동북아 MD체제의 완성을 위해서도 더욱 절실했다. 7월 8일 사드 배치 결정 이후 8월 2일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은 '한미일 군사정보공유와 한미일 공동군사작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내용이 복잡하지 않고, 문안은 이미 2012년에 만들어졌다. 한미일 3국의 군사협력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 협정의 체결은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이다.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목적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정보를 두 나라가 교환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해왔다. 하지만 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 협정의 목적은 '군사비밀정보의 보호'다. 미일 군사보호협정도 마찬가지이다. 한일 군사보호협정도 그 성격과 목적은 '협정 체결국 사이에 비밀정보를 안전하게 교환하는 절차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다. 정보교환이 의무가 아니다. 정보교환의 방법이나 정보의 보호와 관리 절차에 대한 협정인 것이다.

2012년에 한일 두 나라가 합의한 군사정보보호협정문 어디에도 정보교환을 의무화한 조항은 없다. 국방부도 '제공당사자와 접수당사자 간에 반드시 정보 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강제 조항'은 없다고 말하고 있다. 처음부터 끝까지 교환된 정보에 대한 관리와 보호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즉 이미 교환된 정보에 대한 보호를 법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II. 한일정보보호협정과 MD

미국은 2005년부터 일본에 대해 미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압박했다. 미국이 일본에 이 협정 체결을 요구한 이유는 미일간에 추진하는 미사일방어(MD) 체제 구축에 대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이무렵 미국은 일본 해상자위대 관계자에 의해 MD 체제 구축과정에서 해상레이더 관련 정보가 유출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 재발방지 차원에서 비밀보호협정이 필요했던 것이다. 미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을 체결할 경우 자위대와 미군 사이에 더 많은 정보가 안전하게 교류되어서 일본의 군사화를 가속화시킬 것이다. 일본 사회에서는 이 같은 일본의 재무장에 대한 비판여론이 존재했다. 일본 정부는 여론의 동향을 살피다가 2007년 8월이 되어서야 일본은 미국과 이 협정에 서명했다.

미국은 2009년부터 한일간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주문했다. 당연히 MD 구축과정에서 비밀유지를 위한 정보 보호가 주목적이다. 그런데도 그동안 정부는 한일간 북한 핵에 대한 정보교류가 주목적이라고 말해왔다.

한일 두 나라 사이에는 군사비밀정보가 이미 교환되고 있다. 2009년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국방부와 일본 자위대 사이에 군사교류를 활발히 하기로 했던 것이다. 한일 간에는 국가안보 이익상 보호가 필요한 방위 관련 2,3급 군사기밀을 이미 교류해왔던 셈이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체결된다면 이 협정에 의해서 비밀보호가 철저히 유지되므로 한일 양국은 각종 군사정보 교류를 활발히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한미일 3자 간 정보공유 약정을 이미 맺은 상태이기 때문에 한일 간의 군사정보 교류는 다각적으로 진행되게 된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MD체제 구축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다. 한국에 배치하게 될 사드 레이더의 탐지 능력은 일본에 배치된 사드 레이더와 미국 본토의 MD체제와도 통합된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면 사드 레이더 뿐만 아니라 한국의 자체적인 탐지 추적 정보도 MD체제와 통합되어 나갈 것이다. 미국은 한국이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제(KAMD)가 미국의 MD체제에 편입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였다. 이런 불만이 해소되게 되는 것이다.

III. 한일정보보호협정과 자위대

일본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협정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날개를 다는 효과를 거두게 된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이란 미국을 후방에서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타국에서 벌어진 전쟁에 자위대가 개입하는 것을 말한다. 작년에 미일 가이드라인을 개정한 이후 일본에

서는 공공연하게 한국의 영해에서 북한을 공격할 수 있다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정부는 일본이 신호정보(SIGINT)에서 우리보다 비교우위에 있으므로 한일군사정보 교류는 우리의 국가이익에 도움이 된다고 말해왔다. 하지만 한국과 정보교류를 통해서 일본은 자체적으로 수집한 신호정보(SIGINT), 통신정보(COMINT)에 대한 가치를 더욱 높게 될 것이다.

일본은 1983년부터 '극동사태연구'라는 이름으로 작전중인 미군에 협력하는 방안을 연구해왔다. 이때부터 대상지역은 한반도를 비롯하여 필리핀, 대만이 포함되었다. 1997년에 미일 가이드라인이 개정될 때는 극동사태가 '주변사태'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다. 주변사태가 한반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분명한데도 일본은 주변사태는 지리적 개념이 아니라고 호도해왔다. 하지만 2015년에 미일 가이드라인을 개정하면서 주변사태가 한반도를 포함한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2015년 4월에 개정된 미일 가이드라인에서는 주변사태를 일본에 영향을 미치는 위기시로 확대했다. 이 위기시를 대비해서 정보활동, 감시정찰, MD, 해상방어, 군사훈련, 재난구호에 대한 등 미일의 공동 대비책을 마련한 것이 2015년에 개정된 미일 가이드라인의 내용이다.

결국 일본은 한일군사정보보호 협정을 자위대가 활동할 수 있는 정보를 확보하는 용도로 활용할 것이다. 자위대의 위기시 활동무대에는 한반도도 포함된다. 한국이 러시아를 포함한 32개국과 군사정보 공유를 위한 협정이나 약정을 맺고 있다는 말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희석시킬 사안이 아닌 것이다.

일본은 한국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영토적 야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나라이다. 식민지 강제지배에 대해서도 사과를 하지 않으면서 다시 대동아공영권을 꿈꾸고 있다. 그런 일본과 군사정보 교환을 원활히 하게 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서둘러 체결하려는 것은 최순실 게이트로 정국이 혼란한 틈을 노리는 일본의 의도이다. 국방부가 일본의 의도에 맞장구를 칠 이유가 없다.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대북한 정책이나 대일본정책에서도 변화가 예상된다. 향후의 동북아정세를 내다보면서 신중한 행보를 해야할 때이다. (2016/11/14)

(이 글은 시사인 478호에 기고한 글을 코리아연구원 현안진단에 게재할 목적으로 일부 수정·보완한 글입니다.)



※코리아연구원(이사장: 박영재 / 원장: 김창수)은 네트워크형 싱크탱크로 정치·외교, 경제·통상, 사회통합분야의 정책대안을 제시합니다. 회비 및 기부금은 공익성기부금으로 인정되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생각 네트워크, 코리아연구원의 회원 등록을 권합니다.

※CMS자동이체

홈페이지(www.knsi.org)에서 직접 후원회원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처로 전화(02-733-3348)주시면 더 쉽습니다.

※온라인 송금

우리은행 1005-100-937962(예금주: 새로운코리아구상을위한연구원)